2020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https://www.gn.go.kr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인사말

위원장 고 광 록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구성되면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과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원화되면서 갈등의 질과 수준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갈등관리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이 많은데 비해 해결능력은 낮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사회갈등지수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0.71입니다. 터키가 종교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미성숙한 타협의 문화, 법질서에 대한 존중결여 등이 복합된 결과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1인당 GDP 27%가 갈등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무려 300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사회갈등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갈등을 수용하기도 하고, 갈등조정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순기능으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김한근 시장 취임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제기되는 민원을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원을 발굴하고 공론화 함으로서 갈등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려 노력했습니다.

중국 동위의 고환이라는 승상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모두 기를 쓰고 실마리를 풀고 있을 때, 둘째 아들 고양은 단칼에 실타래를 잘라 버립니다. 결국 왕위까지 물려받습니다.

갈등도 이와같이 일도양단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갈등은 이런 발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해결돼서도 안됩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마리를 찾아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공익을 앞세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개인의 문제를 국가(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됩니다.

행정관청과 시민(市民)간 갈등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익을 제한함으로서 공동체가 얻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하며, 집단민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기피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집단과 시민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은 없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아직도 강릉시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갈등까지 한꺼번에 표출되면 일상의 시정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발족 2년을 맞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져야 할 이유입니다.

실타래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마리를 찾아서 푸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함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찾아가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아닌 갈등요소를 사전에 흡수할 수 있도록 시(市)정부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 주신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소한 분야에서 새롭게 업무의 틀을 정립하느라 애쓰신 실무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늘 시민들과 함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CONTENTS

인사말 ····· 02

1 위원회 운영개요

도입배경 ····· 08
연혁 ····· 09
위원회 소개 ····· 10
위원회 기능 및 권한 ····· 13
위원회 운영 ····· 14

2 위원회 운영결과

1. 고충민원 ····· 20
-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20
- 고충민원 사례 ····· 21

2. 민원상담 및 법률상담 ····· 79
- 민원상담 (민원인) ····· 79
- 법률상담 (공무원) ····· 82

3. 위원회 주요활동 ····· 83

3 부록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94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11

1 위원회 운영개요

도입배경

연혁

위원회 소개

기능 및 권한

위원회 운영

1 도입배경

-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월한 지리적 특성상 개발과 보존의 공생 지혜가 필요하다.

-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계기로 각종 SOC, 대규모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 추진이 환경문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분쟁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잠재된 행정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져 민원의 성격도 복합 다양화되는 추세라 하겠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상충적인 이해와 관점을 소통과 완충의 조정역할로 갈등관리를 최소화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2 연 혁

2018. 08. 20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수립
2018. 11. 14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 12. 27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 01. 21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운영
	– 공무원 2명 파견
2019. 05. 07	제1기 위원회 구성(출범) : 위원 7명(비상근)
2020. 04. 07	김진 위원 위촉

3 위원회 소개

위원회 구성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의회 및 집행기관과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명의 위원이 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민원조사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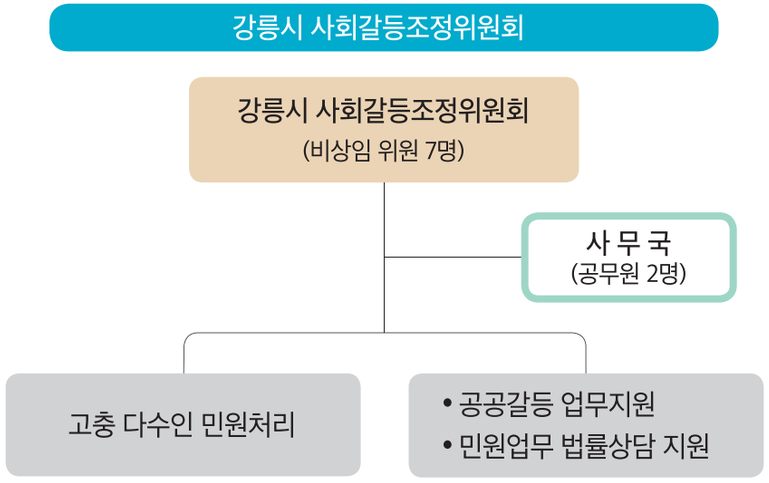

위원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 임기

- 위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기 위원임기 : 2019.5.7. ~ 2021.5.6.)

위원회 회의

- 정례회 매월 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현황 (2020년 12월 기준)

	위원장 고 광 록	▪ 現 율곡법무법인 변호사 ▪ 前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 위촉기간 : 2019.5.7.~2021.5.6
	위원 최 승 용	▪ 現 명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現 강릉시건축사협회 회계감사 ▪ 위촉기간 : 2019.5.7.~2021.5.6
	위원 김 규 수	▪ 現 김규수법률사무소 ▪ 現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 위촉기간 : 2019.5.7.~2021.5.6
	위원 심 지 현	▪ 現 법무법인 클라쓰(강릉) ▪ 前 강릉경찰서 자문위원 ▪ 위촉기간 : 2019.5.7.~2021.5.6
	위원 장 분 성	▪ 前 강릉시 보건소장 ▪ 위촉기간 : 2019.5.7.~2021.5.6
	위원 윤 도 현	▪ 現 강릉생명의 숲 사무국장 ▪ 現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위촉기간 : 2019.5.7.~2021.5.6
	위원 김 진	▪ 現 법무법인 지향(강릉) ▪ 現 고용노동부 고문변호사 ▪ 위촉기간 : 2020.4.7.~2022.4.6

4 위원회 기능 및 권한

관할

- 강릉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주요 기능

-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집단민원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위원회 활동 관련 홍보 교육
- 위원회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주요 권한

- 민원 조사 : 관련 부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
- 권고 및 의견표명 :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을 통한 문제 해결
- 감사의뢰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부서 감사의뢰
-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 고충민원 처리현황, 처리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표

5 위원회 운영

강릉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다수인 민원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사회갈등	강릉시가 공공정책(자치법규 제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민원의 신청 및 조사

- 누구든지(재한 외국인 포함)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이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의 신청은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기간은 6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 등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통지.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 기간 변경 가능

민원처리 예외대상 (조례규칙 제5조)

민원의 각하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가 진행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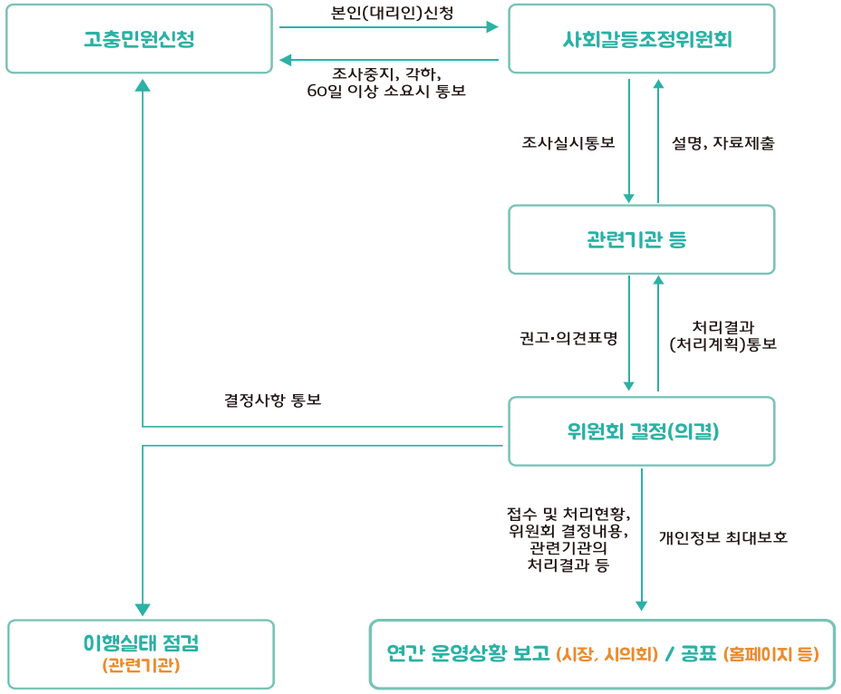

위원회 결정유형 (10가지)

01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02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03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05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06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7 기 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8 각 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09 이 첩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2 위원회 운영성과

고충민원
-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고충민원 사례

민원 및 법률상담
- 민원상담
- 법률상담

위원회 주요활동

고충민원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연 번	주요내용	소관부서 (피신청인)	처리결과
1	강릉항 요트마리나 운영사 불법 및 운영 방치에 대한 민원제기	해양수산과	기각, 의견표명
2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일자리경제과	기각, 의견표명
3	주문진문화교육센터 강사 선정과정 부당성 제기	주문진읍	기각, 제도개선권고
4	아파트선거관리위원 선임과 동별대표자 선거 불법제기	주택과	기각, 의견표명
5	현황도로 폐쇄에 따른 민원	구정면	각하, 의견표명
6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에너지과	각하, 의견표명
7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허가 취소	건설과	기각

고충민원 사례

강릉항마리나 불법운영개선과 계류비 책정료 민원제기

민원 신청내용 요약

강릉항 요트마리나를 운영하는 ㈜○○○○의 불법 및 운영방치에 대해 민원제기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O호, 강릉항마리나 불법운영개선과 계류비책정료율건
- 신 청 인 : OOO 외 30명(강릉시 OO로 O)
- 피신청인 : 강릉시(해양수산과)
- 주 문
  1. 신청인의 관할권지정, 마리나항만구역 법령해석, 계류비산정, ㈜OOOO의 대화거부, 대포항 등록취소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다.
  2. 신청인의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
  3. 신청인의 계류시설에 대한 신청은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한다.
- 결정일자 : 2020.4.10.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신청인 ㄱOO 외 30인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요트·보트의 선주로서 강릉항 요트마리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강릉항 요트마리나를 운영하는 ㈜OOOO의 불법 및 운영방치에 대하여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강릉시와 수산청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하여 수차례 다음의 해결요청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나. 관할권 지정 관련

강릉항 요트마리나의 계류장시설과 클럽하우스 건물에 대한 관리가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중 어느 쪽 관할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지난 10년간 양 기관이 책임을 미루면서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건축법위반행위 관련

클럽하우스 건물내의 불법숙박시설설치 영업행위에 대하여 법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관할청과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과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라. 계류시설 관련

강릉항 요트마리나의 엉터리 계류시설(문짝,전기,수도,소방시설 등)이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2020년 5월말까지 연장한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

마. 마리나항만구역 법령해석 관련

동해해양수산청의 담당자는 "강릉항마리나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무법지대"라고 하며 "법령 중간의 허가부분만 적용되고 관리규정이 없어 처벌 등 손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법을 중간만 떼어 적용가능한지 명확한 판단을 요구한다.

바. 강릉항마리나의 계류비산정 관련

1) 주변 마리나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된 시설의 강릉항 마리나가 왜 가장 비싼지 몇번이고 질의해도 ㈜OOOO는 답변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만 한다.

2) 마리나 계류비는 배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길이 9미터이상 10미터 미만의 선박을 기준으로 할 때, 양양 수산항 마리나(월 15만원), 속초항 마리나(월 14만 4천원), 여수 이순신마리나(월 244,000원)인데 비하여 강릉항 마리나는 월 511,500원이다.

3) 이처럼 동일 사이즈의 경우 월 14만 4천원 미만이 되어야 정당하나 강릉항 마리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게다가 다른 마리나들에 비하여 열악한 시설임에도 월 511,500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사. ㈜OOOO의 대화거부 관련

1) ㈜OOOO는 선주들의 면담요청에도 계속 불응하며 대화를 거부하였고 이에 선주협회에서 단체행동을 하고 강원영동MBC에서 여러번 보도를 하자 강릉이 고향이고 터전인 "선주들을 나가라"고 겁박하였고 일부 선주들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

2) 이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 5(등록사업자의 의무)위반이므로 동법 제28조의 6(시정명령)의 대상인데 강릉시 또는 동해해양지방수산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아. 대포항마리나 등록취소 관련

㈜OOOO에서 운영중인 인근 대포항 마리나시설은 현재까지 계류실적이 없으므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7(등록 취소)에 '허가이후 1년 이내 실적이 없으면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OOOO의 대포항 마리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건축법위반행위 관련

1) 요트마리나 클럽하우스(강릉시 견소동 286-11)는 「어촌·어항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OOOO가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수익신고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개축·증축·대수선 등 위반사항은 무상사용·수익신고 승인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조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은 강릉시에 있다.

2) 강릉시 건축과는 상기 건축물의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시정요청하는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발송하였으며(건축과-27475, 2019.11.26.) 강릉시 해양수산과는 ㈜OOOO측에 2019.12.20. 까지 시정(원상회복) 및 사용재산의 규모·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서를 발송(해양수산과-16173, 2019.12.2.)하였고 해양수산과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과-17486, 2019.12.30.)과 ㈜OOOO(해양수산과-17533, 2019.12.31.)에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요청을 하였다.

3) 이에 ㈜OOOO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2020.2.28.까지 이행조치 완료 결과를 발송하겠다고 답변(OOOO 대외 2020-0207-002호, 2020.02.07.)하였으며 그 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에 대한 조치완료하였음을 회신하였다(OOOO 대외 제2020-0221-001호, 2020.02.21.)

4) 해양수산과는 요트마리나 클럽하우스 건축법 위반사항(제14조 증축신고 위반및 제19조 용도변경허가 위반)에 대하여 ㈜OOOO에서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문서를 건축과에 발송(해양수산과-2574, 2020. 2.24.)하였다.

5) 이상과 같이 건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였기에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계류시설 관련

1) 요트계류시설은 ㈜OOOO에서 강릉시로부터 「어촌·어항법」제38조 규정에 의거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마리나업의 등록)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마리나 선박 보관 ·계류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강릉시는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허가신청알림(해양수산과-1612, 2019. 11. 29.)에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개선할 것을 적시하였고이에 ㈜OOOO에서 지적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0년 5월31일까지 완료하는 내용의 조치계획(OOOO대외 제2019-1210-002호, 2019.12.19.)을 발송하였다.

3) 위 조치계획에 대하여 2019.12.11. 현장확인한 결과 요트계류장시설물(수도,전기, 조명등 등)

및 출입문 고정 불량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로 보기 어려워 조치계획 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통상적인 허가기간인 3년이 아니라 조치계획 완료일(2020.5.31.)까지만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기간연장)처분(해양수산과-16651, 2019.12.11.)을 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조건에 의거 어항관리청으로서 지도·감독을 다하고 있으며 요트계류시설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 바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 강릉마리나 선주협회 공문(→ 강릉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9. 9. 30.
- 회의(강릉시 1차)
  - 일 시 : 2019. 10. 1.
  - 장 소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 참석자 : 해양수산과(ㄱOO, ㅊOO) 마리나선주협회(ㄱOO)
  - 안 건 : 강릉마리나선주협회 2019년 9월 30일자 민원건
- 회의(강릉시 2차)
  - 일 시 : 2019. 10. 4.
  - 장 소 :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 참석자 : 해양수산과(ㄱOO, ㅊOO)
    마리나선주협회(ㄱOO외 2)
  - 안건 : 강릉마리나선주협회 2019년 9월 30일자 민원건
- 회의(동해해양지방수산청 1차)
  - 일 시 : 2019. 10. 8.
  - 장 소 : 강릉항마리나 헤밍웨이 선실
  - 참석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ㄱOO)
    마리나선주협회(ㄱOO외 3)
  - 안 건 : 강릉마리나선주협회 2019년 9월 30일자 민원건
- 강릉마리나 선주협회 공문(→ 강릉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9.10.30.
- 회의(동해해양지방수산청 2차)
  - 일 시 : 2019. 11.12.
  - 장 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참석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ㄱOO외 1)
    마리나선주협회(ㄱOO외 2)
  - 안 건 : 강릉마리나선주협회 2019년 9월 30일자 민원건

【 클럽하우스 건축용도 위반사용 관련 】

- 강릉시 조치
  - 현장조사(강릉시, 강릉소방서) :'19.11.19
  - 위반사항 통보(해수부) :'19.11.26 / 12.30.
  - 위반사항 시정 통보(OOOO) :'19.12.2 / 12.31.
- ㈜ OOOO의 회신
  - '20.2.28.까지 이행조치완료결과 발송 계획 :'20.2.7.
  -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완료 회신 : '20.2.21.
- 시정조치 완료 회신 알림(해양수산과→건축과) :'20.2.24.

【 계류시설 관련 】

- 요트계류장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만료기간 및 민원사항 조치계획서 첨부 연장허가 신청안내('19.11.29)
- ㈜OOOO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19.12.10.
  - 2020년 5월 31일까지 완료
- 현장출장(해양수산과) : '19.12.10.
-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처분(해양수산과) :'19.12.11.
  - 허가기간 만료('19.12.14)
  - 민원사항 해소 기간까지 연장허가 :'19.12.15 ~ '20.5.31

【 국민신문고 】

- 강릉시청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책임한계를 확인해 주십시오:'19.12.24.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답변 : 2020.1.2.
  - 강릉항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건물에 대한 위법 및 시설개선은 강릉시에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등록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등 조치가능
- 강릉시 해양수산과 답변 : 2020.1.3.

– 개축·증축·대수선 등 위반사항은 무상사용·수익신고 승인기관인 해양산부에서 조치해야 한다.
–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은 강릉시에 있다.
– 요트계류시설은 어항관리청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 없도록 운영사측과 지속협의 및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4. 판 단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영업시설군(다.숙박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나.제2종 근린생활시설)

【어촌·어항법】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 · 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 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마리나업"이란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 · 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 1. 6.〉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마리나선박 보관 · 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 · 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

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28조의6(시정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워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나. 건축법위반행위 관련

1) 강릉시 견소동 286-11상 해양수산부 소유의 건축물(클럽하우스)에 대하여 「건축법」위반 관련 민원제기가 있어 건축과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지상 1층 사무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4조 위반(증축신고위반, 46.8㎡), 지상 3층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9조 위반(용도변경허가위반, 166.7㎡)이 확인되어 2019.11.26. 건축주인 해양수산부('19.11.26. / 12.30.)와 ㈜OOOO에 각 2회('19.12.2. / 12.31.)시정명령을 요청하였다.

2) 요트마리나 클럽하우스는 ㈜OOOO가 해양수산부에 「어촌·어항법」 제26조에 의거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수익신고를 받아 사용하던 중 위와 같은 건축법위반행위를 하였고 현재는 ㈜OOOO에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이행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회신(2020.2.21.)하였고 해양수산과는 건축과에 시정조치완료회신을 통보하였다.(2020.2.24.)

3)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지도·감독관청인 강릉시는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당시 이미 관련절차를 이행중이었고 그후에도 후속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강릉시의 건축법위반행위와 관련한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계류시설 관련

1) 요트계류시설은 ㈜OOOO에서 강릉시로부터 「어촌·어항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아「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마리나업의 등록)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마리나 선박 보관 ·계류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신청인이 지적하는 부실한 계류시설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는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허가신청알림(해양수산과-1612, 2019.11.29.)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는 2020년 5월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OOOO 대외 제2019-1210-002호, 2019.12.19.)을 발송하였다.

3) 위 조치계획에 대하여 2019.12.11. 해양수산과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요트 계류장시설물(수도,전기, 조명등 등) 및 출입문 고정 불량으로 나타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로 보기 어려워 조치계획 재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통상적인 허가기간인 3년이 아니라 조치계획 완료일(2020.5.31.)까지만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기간연장)처분(해양수산과-16651, 2019.12.11.)을 하였다.

4) 이상과 같이 현재 부실한 계류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에서 2020. 5. 31.까지 조치완료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이후 허가조건에 맞는 적절한 계류시설의 조성여부를 사용·점용허가기간 만료시에 신청인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해양수산과의 업무처저리절차에 특별히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어촌·어항 법」제38조는 제5항에서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조치계획완료에 필요한 허가기간이 완료될 때 (2020.5.31.) 신청인이 제기한 계류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과 '어항개발계획'및'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이라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규정의 입법목적이 적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와 개발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반영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한다.

라. 기타 관련

1)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할권)는 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 경우로서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2) 이렇듯 본 위원회는 강릉시의 관할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과 신속,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그렇다면 이러한 관할의 한계를 가진 본 위원회가 강릉시가 관할을 갖는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을 갖는지 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강릉시가 관할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결정할 따름이다.

3) 따라서 강릉시의 관할이 아닌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간의 관할을 지정(신청원인 나.)하거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법령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신청원인 마.)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인간의 계약내용인 계류비산정의 타당성(신청원인 바.)이나 마리나운영업체의 대화거부(신청원인 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관할인 대포항 등록취소여부의 타당성검토는(신청원인 아.) 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신청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 중 나.신청인의 관할권, 마.마리나항만구역 법령해석, 바.계류비산정, 사.㈜OOOO의 대화거부, 아.대포항등록취소에 대한 신청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각하하고 다.신청인의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며 라.계류시설에 대한 신청은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신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OOOO부동산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 취소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O호,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신청
- 신 청 인 : ㄹOO 외 238명
- 피신청인 : 강릉시(일자리경제과)
- 주 문

  1. 신청인의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신청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에게「강릉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의견 표명한다.

- 결정일자 : 2020. 4. 10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신청인 ㄹOO 외 238인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강릉시 OO동 OOOO오피스텔 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ㄹOO) 하고 있거나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ㄹOO 외 238인)이다.

담배소매인지정이 되지 않은 ㄹOO의 편의점에 담배구매자들이 담배를 사러 오면 담배소매인 'OOOO공인중개사'(이하 OOOO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구입할 것을 안내하지만 OOOO부동산의 잦은 부재로 구입하기 어렵고 이를 안내한 ㄹOO에게 원망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O부동산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취소를 요구한다.

나.「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부적당한 장소) 관련

1)「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강릉시 규칙"이라 한다)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1항에는 소매인지정을 하지 않는 사유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공인중개소는 업종성격상 매물을 현물로 보여야 하는 영업적 특성 때문에 매매, 임대 문

의가 오면 자주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어 담배소매으로 지정되기에는 본질상 부적당하다.

3) 실제로 OOOO부동산 역시 잦은 폐점으로 신청인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담배소매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잦은 폐점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OOOO부동산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시공사 "㈜OOO종합건설"이 OOOO부동산이 입점한 상가를 향후 담배권(담배소매인지정)과 같이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OOOO부동산 대표 "ㅈOO"의 명의를 빌려 담배권(담배소매인지정)을 취득하였기에 불법으로 취득한 담배권(담배소매인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담배구입내역 관련

"OOOO부동산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담배 2보루만 구매할 정도로 잦은 폐점으로 정상영업상태가 아닐뿐더러", "2016년~2018년까지 담배구매가 6개월에 1보루에 지나지 않고(2020.02.05. 민원신청서) "케이티엔지에 담배 매출을 물어본 결과 한달에 3만원에서 7만원선의 매출을 유지"(2019.11.15. 국민신문고)하는 등 구매실적이 저조하기에 담배소매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마. 담배판매표시 미부착 관련

담배판매소매지정 후 담배판매소표시판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 10월 30일 국세청신고로 부착하였는데 이는 관리감독기관인 시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부적당한 장소) 관련

1) 해당 규정("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은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내용으로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강릉시 외에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규정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인용하고 있다.

2) 자주 폐점이라는 기준 및 정확한 정의가 없고, 현재 강원도 내 해당 규정이 있는 대다수 지자체가 부동산(공인중개소)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고 있고 원주(2014년), 춘천(2018년)은 규칙 개정 전까지 부동산중개소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

3)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부적당한 장소로 부동산을 명시하지 않는 한 부동산에 대한 소매인지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명의대여에 관한 처벌규정은 담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담배구입내역 관련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나 KT&G에 확인결과 OOOO부동산은 꾸준히 담배를 매입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담배판매표시 미부착 관련

담배표시판 미부착 및 외출 등에 관하여 법적 처벌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 2019.11. 5. 국민신문고 접수

≪사업명의대여로 취득한 담배권 취소시켜주세요≫

- 시공사(주)OOOO종합건설이 OOOO부동산 대표 ㅈOO의 명의를 차용
- KT&G에 문의결과 월 3만원~7만원 선의 매출

- 2019.11.16. 국민신문고 결과 통보(수용불가)

- OOOO부동산은 2016년 6월 적법하게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2019.11.25. 국민신문고 접수

≪사업장 담배권확인 부탁드립니다≫

- OO지구 선수촌에 있는 OO가게에서 담배구입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은 주문진사업장으로 발행

- 2019.11.26. 탄원서 접수(ㄹOO 외120명)

- OOOO부동산 담배구매불편 민원을 해결해주세요

- 2019.12. 2. 국민신문고 결과 통보(문제 없음)

- 주문진OO사거리점은 2014년 11월 주문진읍 항구로 OO으로 주소 지정
- 2017년 5월 OOO로 OO-O으로 위치변경 신청 및 승인
- 현장확인 결과 OOOO내에 별도의 공간으로 OO주문진점이 위치하여 있고 기존상호인 OO주문진사거리점으로 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은 문제 없음

- 2019.12. 2. 탄원서 민원에 관한 답변

- OOOO공인중개사무소 및 주문진 OO사거리점에 관련 불편사항을 전달 및 개선 협조요청
- 민원인이 요구한 영업시간 내 담배판매(상시인력 고용 등)
- 담배판매종류 보충(50종류 이상 비치 요청)

4. 판 단

가. 관계법령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각 목을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한다.

①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부적당한 장소) 관련

1) 「강릉시 규칙」 제6조는 법 제16조제3항(2014년 법 개정으로 법 제16조제2항제2호로 변경)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2017년 개정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으로 변경)의 각 목을 포함하는 장소와 함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소매인지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정제외대상을 규정하면서 특히 제1호에서 인적지정제외대상을 제2호에서 장소적 지정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첫째, 「강릉시 규칙」제6조의 부적당한 장소 여부는 소매인지정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지정 후 야간영업이나 잦은 폐업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영업장의 지정을 취소하라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둘째, 「강릉시 규칙」제6조의 문언상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법 제17조에서 소매인지정의 취소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강릉시규칙」 제6조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 주장의 소매인 지정취소를 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러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은 제7조의3제1항 제1호에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제2호에서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다시 제3호에서 부적당한

장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규칙의 내용은 2009년 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에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담매소매인지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듯이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어야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6) 그러나 「강릉시 규칙」제6조는 부적당한 사유로 '야간영업 또는 잦은 폐점' 그리고 '식품접객업 운영업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야간영업 또는 잦은폐점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없어 법령을 집행함에 어려움이 많고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며 담배소비자들의 불편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춘천, 원주 등)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여 부동산중개소를 포함하여 담배소매인으로서 부적당한 장소를 다양하게 규정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강릉시 또한 위임입법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고 담배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7) 한편 2009년 「강릉시규칙」이 제정된 후 담배사업법,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상위법령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강릉시규칙」 또한 이에 걸맞은 조문의 수정과 정비가 필요하다.

다.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1) 명의대여란 자기의 명의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일자리경제과-9917호,2020.3.20.)에 의하면 OOOO공인중개사무소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2016.6.21. "ㅈOO"명의로 허가되었으며 명의자"ㅈOO"가 담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2) 더구나 사업자명의대여는「조세범처벌법」제11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담배사업법은 사업자명의대여와 담배소매인지어 취소는 포함하여 관련 규정이 따로 없다.

3) 그렇다면 사업자명의대여를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담배구입내역 관련

1)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0.2.14.기준 OOOO 공인중개사 월별 KT&G 매출량자료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인 OOOO부동산 2016년도의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415보루(12월은 미구입)를, 2017년도에 연간판매량 196보루, 2018년도는 220보루(5월과 7월 미구입), 2019년도는 연간판매량이 338보루(6월, 9월 미구입) 2020년도 1월은 120보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3) OOOO 부동산은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90일 이상 미구입이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담배구입내역을 이유로 한 소매인지정 취소요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담배판매표시 미부착 관련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에게 담배판매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직무유기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 중 나.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부적당한 장소) 관련 피신청인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의견표명'하며 나머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2019년 하반기 개강 및 2020년도 강사 선정과정에 대한 민원

민원 신청내용 요약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2019년 하반기 개강 및 2020년도 강사 과정 부당성 제기 및 개선요구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O호,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2019년 하반기 개강 및 2020년도 강사 선정과정에 대한 민원
- 신 청 인 : ㄱOO
- 피신청인 : 강릉시(주문진읍)
- 주 문
  1. 강릉시 평생학습관에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문진 문화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 결정일자 : 2020. 7. 10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2019년 하반기 수강생모집 마감시간 전 폐강통보 및 과목별 차별적 수강신청 독려 연락 관련

1) 수강생모집 마감시간은 금요일 오후 6시인데 오후 4시 30분에 하반기 중 OO수업이 정원미달로 폐강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해가 되지 않아 월요일에 찾아가 마감시간 전에 폐강을 통보한 이유를 묻자 "수업료 관련 은행업무도 봐야하고 OOO수업에는 6명이 신청하여 정원 12명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통보했다."고 답하였으며

2) "모집과정에서 OO강사에게는 수강신청 독려연락을 주셨다했는데 저에게는 왜 연락을 안 주셨나요?"라고 묻자 "영어는 1~2명만 더 수강신청하면 개강할 수 있어서."라고 답하는 등

3) 이해하기 어려운 형평성에 어긋난 공무원의 행정처리 및 답변을 서로 미루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화가 나고 실망이 크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개선을 요구한다.

나. 2020년 교육강사 선정시 강사선정기준표상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을 제외하고 「봉사활동」 항목을 추가한 것과 관련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사선정심사기준표상 포함되어 있던 「해당어학분야 저서발간」항목이 빠져 있어 담당공무원(담당)에게 문의하자 "저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뺐음"(2월7일 답변), "책을 쓴 사람이 강사님(민원인)밖에 없어서"(2월11일 답변)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을 제외하고 「봉사활동」항목은 빼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 재량으 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 바 이러한 공무원의 답변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상식 밖의 답변이었으며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능력을 신뢰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다. 강사선정 심사위원회를 외부 교육전문가 없이 주문진읍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것과 관련

2020년도 교육강사선발과정은 지금껏 없었던 7명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발했는데 정보공개서류를 통해 확인한 바 7명 모두 주문진읍사무소 공무원이다. 교육강사를 선정하는데 단 한 명의 교육분야전문가도 없는 운영위원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첨부서류의 "2020년 교육강사선발기준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준표 하단의 깨알 같은 크기로 작성된 심의 심사항목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항목이라 생각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19년 하반기 수강생모집 마감시간 전 폐강통보 및 과목별 차별적 수강 신청 독려 연락 관련

1) 마감 전 미달강좌에 따른 폐강될 것 같다는 통보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강좌 강사에게 통보해 온 것으로, 다른 강좌와 1~2시간 차이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특히 OOO반은 3주라는 접수 기간을 두었음에도 정원(20명)의 60%에 한참 모자라는 6명밖에 수강 접수자가 없었고 마감일 오후에 임박해 6명이 추가 접수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통보를 오후 5시경에(접수마감 오후6시)에 미리 한 것임(정원의 60%에 1~2명 모자란 경우 3~4시에 강사에게 통보를 하여 추가 접수자를 기대하여 기다렸다가 폐강위기를 넘긴 사례가 과거에 있었음).

2) 이 건은 신청인이 하반기 강사수당을 다 수령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굳이 들추어내려는 것은 다음 해인 2020년 강사선발에서 탈락한 것이 하반기 민원제기에 따른 의도적인 불이익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음.

나. 2020년 교육강사 선정시 강사선정기준표상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을 제외하고 「봉사활동」항목을 추가한 것과 관련

1) 피신청인은 2019년 7월에 문화교육센터 담당으로 부임한 후 2020년 강사 선발관련 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2015년부터 심사기준표와 강사 채용 점수표를 검토한 결과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이라는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5년간 수많은 강사 신청자들중에 유일하게 피신청인 1명밖에 없었음을 읍장에게 내부검토와 결재를 통해 이 항목은 대부분의 강사지원자분들에게는 무의미한 기준이며, 혹여 이 항목에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강사가 있어 저서를 발간하여 무리하게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부작용부분도 예상됨에 따라 삭제하고 대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한 강사들에게 가점을 주고자 「봉사활동(최근 3년이내 강원도 및 강릉시자원봉사센터발행)」항목을 포함하였음.

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문진문화교육센터 운영 관련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며 심사기준표와 심사위원회 구성은 내부결재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또한 2020년 강사모집공고 당시 강사구비서류에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관련서류 항목이 원래부터 없었으며, 이것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접수한 강사지원자들 모두 공고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이며, 심사기준표에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을 포함해 심사를 하였다면, 오히려 강사모집 공고 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것임.

3) 이에 신청인은 또 담당 혼자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구두 항의와 수차례 각종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시청 감사실 등에서도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도 지금껏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거 5년간 이 항목에 가점을 받아 온 것은 어찌보면 피신청인 혼자 특혜를 받아 온 것이 아닌지 생각을 달리 해 보시라고 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음.

다. 강사선정 심사위원회를 외부 교육전문가 없이 주문진읍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것과 관련

주문진문화교육센터 강사선발심사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고자 2020년에 처음으로 임시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내부결재)을 통해 강사들이 제출한 강의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7명의 심사위원(주문진읍 담당급) 개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한 강사를 선발한 것으로(심사위원에 피신청인은 제외하였음) 교육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할 만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임시적 심사위원회에 불과하므로 굳이 그럴만한 적정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수당 등 예산도 존재하지 않아 당시 상황은 불가능한 일임

3. 사실관계

- 2020. 1. 06. ~ 1.17. 2020년도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강사 선발 공고 및 접수
- 2020. 1. 29. 강사 선발 내부 임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심사위원 : 주문진읍 담당급 7명 - 문화교육센터 담당 제외
- 2020. 1. 30. 2020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강사 합격자 발표 공고
- 2020. 2월 ~ 3월 신청인의 강사선발심사 기준표등 정보공개 요청 및 제출
- 2020. 3월 ~ 5월 수차례 읍장면담 요구, 시의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
- 2020.5.27.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민원신청서 접수

4. 판 단

가. 관계법령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1조(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설치된 강릉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지역복지·주민편익·

사회진흥 기능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 · 시민교육 기능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읍 · 면 · 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1개 이상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강좌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 면 · 동장이 선정한다.

나. 2019년 하반기 수강생모집 마감시간 전 폐강통보 및 과목별 차별적 수강신청 독려 연락 관련

1)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실제로 2019년도 하반기 중국어반을 개설하여 강의를 하였고 강사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2) 다만 피신청인은 향후에도 예상되는 수강생모집미달 등과 관련하여 공고된 수강모집시간이 있음에도 굳이 수강마감시간 전에 폐강통보를 하여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유사한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2020년 교육강사 선정시 강사선정기준표상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을 제외하고 「봉사활동」항목을 추가한 것과 관련

1) 피신청인은 2015년부터「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이라는 항목에 대해 5년간 수많은 신청자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 1명 밖에 없어서 이 항목은 무 의미한 기준이며, 혹여 이 항목에 점수를 받고자 저서발간을 위하여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삭제하고 대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에 가점을 주고자「봉사활동(최근 3년이내 강원도 및 강릉시자원봉사센터발행)」항목을 포함하였으며

2) 2020. 1. 6. 강사모집공고 당시 강사 구비서류에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관련 항목이 원래부터 없었으므로 심사기준표에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을 포함해 심사하였다면 오히려 강사모집공고 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3)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규정이 없어 집행과정에서 법규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처분은 기각한다.

4) 다만 위법여부와는 별개로 수년간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이 공고에 명시되었기에 신청인으로서는 2020년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이 반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뢰보호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5) 2018년도 공고(주문진읍 공고 제2017-70호, 2017.12.26.), 2019년도 공고(주문진읍 공고 제2019-2호, 2019.1.2.)에서는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최근 5년 이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2020년도 공고(주문진읍 공고 제2020-2호, 2020.1.6.)에서는 「해당어학분야저서발간」항목을 제외하고 「봉사활동」항목을 추가한 것과 관련하여 공고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수년간 유지되어 오던 평가항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을 통해 관련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강사선정 심사위원회를 외부 교육전문가 없이 주문진읍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것과 관련

1) 피신청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2020년에 처음으로 강사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7명의 심사위원(주문진읍 담당급, 심사위원에 피신청인은 제외하였음)이 심사하였으며 본 심사위원회는 임시적 심사위원회라는 점, 심사수당에 대한 예산도 존재하지 않아 외부교육전문가를 초청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2)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심사의 공정성이 우려될 만한 특별히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심사위원회에 외부교육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객관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3) 다만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논란을 방지하고 사전 공지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은 강사선발과정이나 강좌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향후에도 유사한 갈등이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거규정을 제정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관에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문진 문화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선임 무효 및 동별대표자선거 불법에 대한 민원

민원 신청내용 요약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선임과 동별대표자선거 불법에 대한 민원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선임과 동별대표자선거 불법에 대한 민원
- 신 청 인 : ㅈ○○(강릉시 ○○○길 ○○, ○○아파트 ○○○동 ○○○○호)
- 피신청인 : 강릉시(주택과)
- 주 문

  1. 신청인의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구성에 대한 청구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의 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결정일자 : 2020. 6. 12.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선거관리위원 6명중 일부동(○○○동)에서 4명 선출 관련

「○○아파트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6명의 임원으로 되어 있으며 6개동에서 1명씩 선출하여 공정한 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동 동별 대표자를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4명을 위촉하여 선거를 하였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무효이다.

나. 선거관리위원의 특정후보자지지 및 참관인의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위원(ㄱ○○)은 특정 후보(ㄱ○○)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동행하며 그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고 특정후보의 지인을 해당선거구의 참관인으로 참여시켜 공공연하게 투표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하여 당선되게 하므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는「○○아파트관리규약」제41조 제3항에 위배되고 선거의 4대원칙에도 위배되어 불법이며 공정하게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다. 투표중단 및 투표함을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사항 관련

투표시간은 07:30~19:00으로 되어 있으나 오전 11:30분터 15:05까지 투표함을 관리사무소에 임의로 방치하여 이 시간에 투표를 하려고 하던 주민들은 투표를 포기한 사실이 있었고 이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라. 투표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투표한 사항 관련

투표시에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 보관해야 함에도 기표소도 설치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이다.

마. 투표참관인이 선거인명부 대조시 투표자 서명 없이 (√)표시한 사항 관련

투표는 참관인이 투표자의 신원을 선거명부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야 함에도 선거명부에 투표자의 서명도 없이 체크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입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는 원천무효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선거관리위원 6명중 일부동(○○○동)에서 4명 선출한 사항과 관련

1)「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업무,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아파트관리규약」제39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소집한 2020년 4월 24일 대표회의 개최 결과(을 제5호증)에 의하면 제1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재구성을 협의 한 바 있으며, 제13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9명 중 4명이 ○○○동 입주자로 구성(을 제6호증)하여 운영하였다.

3) 또한「공동주택관리법」,「○○아파트관리규약」및「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선출 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4명의 위원은 연임되고 2명의 위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동 통장 및 ○○○동 통장이 추천한 자(○○○동 위원)로 선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결과공고(을 제7호증)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의결을 하여 전달한 사항이 있으므로 선거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민원인)도 충분히 인지하였고 문제 제기가 없었으므로 해당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에 문제점이 없다.

4) 다만, 「OO아파트관리규약」 제39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 중 통장이 추천하는 자를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선거 관리위원 구성원 6명 중 3명을 통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였는 바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제8호증)이 관리규약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대법원 판례(을 제9호증)는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가 무효"라며 "이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현저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나. 선거관리위원의 특정후보자지지 및 참관인의 선거운동 관련

1) 2020.5.25.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인을 관리사무소에서 면담 및 사실조회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더욱이 경선을 치러야 하는 OOO동 선거구에 대하여는 OOO동 입주민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각 동별 참관인을 교차하여 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민원인이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다. 투표중단 및 투표함을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사항 관련

1) 「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투표시간은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 관리위원 2인을 관리사무소에서 면담 및 사실 조회한 결과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구두 합의를 통해 11:30부터 15:00시 까지 중식 시간동안 부득이 참관인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투표를 일시 중단하고 투표함을 봉인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2) 아울러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질의에 대해 투표시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라. 투표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투표한 사항 관련

1) 「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제26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기표소는 경비실에 설치하고 투표소는 승강기 앞에 설치하도록 의결한 바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사무 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투표참관인이 선거인명부 대조시 투표자 서명 없이 (√)표시 관련

1) 「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제31조 규정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인확인 후 (√)표시로 체크하는 사항에 대해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시 의결(을 제10호증)하였다.

2) 다만, 경선이 진행된 OOO동의 경우 경선의 성격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선거인 명부에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이 확인되었다.

3) 선거인명부 날인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 및 운영방법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을 제3호증)하였다.

3. 사실관계

- 2020.5.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6명),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 2020.5.21. ~ 2020.5.22. 투표
- 2020.5.21. 진정서 접수
- 2020.5.25.~ 27 동일 진정서 추가 제출
- 2020.5.25. OO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조사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 조사
- 2020.5.29.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철저 통보
- 2020.5.29. 진정서에 대한 회신
- 2020.6.1.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민원신청서 접수
- 2020.6.8. OO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조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내용 확인)

4. 판 단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 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30] [[시행일 2018.2.1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39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명
2.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명
3.「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명 이내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5.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6.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명(5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제26조(투표소 설치)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및 공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시작시각 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하되, 관할선관위가 대표자 등 선거의 투표·개표사무의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경우 관할선관위는 사전에 공동주택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투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인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인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47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44조(당선인 결정)제2항 각 호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대표자 등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 규약으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이상 선출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제3호의 선거무효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규약 규정

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선거관리위원 6명중 일부동(OOO동)에서 4명 선출한 사항과 관련

1) 신청인은 「OO아파트관리규약」상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6명의 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6개동에서 1명씩 선출하여 공정한 선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동 동별대표자를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4명을 위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2)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일송아파트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어디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 선출 인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3) 또한 신청인의 주장처럼 선거관리위원 정수가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만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OO아파트관리규약」 제39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위원 위촉 및 구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관리사무소장, 통장 또는 이장, 경로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별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공정한 선거라는 목적은 충분히 실현 될 수 있다고 본다.

4) 다만 2020.5.6. 위원공고에서 선거관리위원 6명을 공고하였는 바 4명의 위원은 연임되어 위촉되고 2명의 위원은 「OO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OOO동 통장 및 OOO동 통장이 추천한 자(OOO동 위원)로 신규위촉하였으나 4명의 위원위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위법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OO아파트관리규약」제39조는 위원위촉시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들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위촉된 2인은 2020년 4월28일 각각 추천을 받았으나 연임된 4인은 2018년 최초 위촉시 제출한 추천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이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연임절차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OO아파트관리규약」제39조 제1항 제3호는 통장 또는 이장이 2명 이내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OO통장이 위원 ㅂOO, 위원 ㅊOO를, OO통장이 위원 ㄱOO를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 6명중 통장추천위원이 3인이 되었는 바 이는 「OO아파트관리규약」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도록'의견표명'한다.

다. 선거관리위원의 특정후보자지지 및 참관인의 선거운동과 관련

1) 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ㄱOO)이 특정 후보(ㄱOO)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후보의 지인을 해당선거구의 참관인으로 참여시켰다고 주장하나

2) 피신청인은 2020.5.25.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인을 관리사무소에서 면담 및 사실 조회한 결과 위의 주장과 같은 사실은 없었다고 하며 더욱이 경선을 치러야 하는 OOO동 선거구에 대하여는 OOO동 입주민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동별 참관인을 교차하여 배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 및 참관인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인이 이와는 다르게 주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투표중단 및 투표함을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사항 관련

1) 신청인은 투표시간중 투표를 중단하고 투표함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은 이 시간동안 투표를 하고자 하는 투표자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2) 피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인을 관리사무소에서 면담 및 사실 조회한 결과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구두 합의를 통해 11:30부터 15:00시 까지 중식 시간 동안 부득이 참관인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투표를 일시 중단하고 투표함을 봉인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3) 「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투표시간은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또한 투표시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하므로 중식시간 참관인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가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마. 투표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투표한 사항 관련

1) 신청인은 기표는 경비실에서 하고 투표는 승강기앞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하는 것은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2) 「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 제26조 및 제31조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투표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2020.5.13.)에 의하면 투표절차는 경비실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승강기 앞에 투표소에 설치하도록 의결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바

4) 그렇다면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투표참관인이 선거인명부 대조시 투표자 서명 없이 (√)표시한 사항 관련

1) 신청인은 투표는 참관인이 투표자의 신원을 선거명부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야 함에도 선거명부에 투표자의 서명도 없이 (√)표시 체크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2)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확인 후 (√)표시로 체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선거당일(2020.5.2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시 의결(을 제11호증)하였으며 경선이 진행된 OOO동의 경우에는 경선의 성격을 감안해 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선거인 명부에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비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는 하나 투표절차와 관련하여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제31조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의견표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2020.5.29.「공동주택동별대표자 선거관리업무 철저 통보」형식으로「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이미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 위법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분의무

1)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 중 가.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구성, 바. 투표참관인이 선거인명부 대조시 투표자 서명 없이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거관리에 위법한 점이 인정되지만

2)「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제47조 제1항은 "공동주택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규약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공동주택선거관리규정」제47조 규정을 살펴보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해 피신청인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이를 전제로 하는 처분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상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해 선거관리관련규정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 중 가. 선거관리위원 6명중 일부동(OOO동)에서 4명 선출한 사항, 바. 투표참관인이 선거인명부 대조시 투표자 서명 없이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선거관리 관련법령에 위법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의견표명'해야 할 것이나 바. 투표참관인이 선거인명부 대조시 투표자 서명 없이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행정지도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가. 선거관리위원 6명중 일부동(OOO동)에서 4명 선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정면 ○○리 현황도로(○○○번지 상)폐쇄에 따른 민원

민원 신청내용 요약

구정면 ○○리 현황도로(○○○번지 상) 폐쇄에 따른 민원제기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리 현황도로(○○○번지 상) 폐쇄에 따른 민원
- 신 청 인 : ㅂ○○(강릉시 구정면 ○○○로 ○○○-○)
- 피신청인 : 강릉시(구정면)
- 주 문

  1. 강릉시 건설과에 구정면 ○○리 ○○○번지 국유지(지목:도로)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건축되어 있는 ○○리 ○○○ 소유의 구)노인정 건물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 결정일자 : 2020. 8. 7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주택(구정면 ○○리 ○○○-○번지)진출입로 확보요청 관련

1) 수십년전 마을○○회는 기금등을 통해 ○○○번지를 기반으로 ○○○번지 도로를 포함하여 구)노인정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대신 ○○○번지상의 현황도로를 내어주어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는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으며 최근 마을회관이 신축 활용되면서 구)노인정은 신축마을 회관으로 옮겼으며 구)노인정 건물은 현재 임대등으로 개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이후 유사한 마을 소유재산이 점차 불어나자 마침내 이러한 재산들을 매각처분하여 마을회 회계에 산입하자는 취지의 결의가 2019 마을총회 (2019.12.26.)에서 있었고 그 매각처분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 ○○○번지(○○㎡)가 매각되었으나 그 진행은 일반인에게는 일체 알려지지 않은 채 깜깜이로 진행되어 마침내 문제의 구정리 ○○○번지가 마을○○회에서 마을총무의 처로 알려진 ㅊ○○에게 등기이전되었다.

3)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는 전 ㅅ○○이장 임기 중에 당시 마을 운영위원 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약속한 임시개설선이 있었음에도 "전임 이장에게 인수받지 못했다.",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민원인은 자신(이장)에게 그 동안 한마디도 없었느냐?"등 책임회피만 한 결과 이제 마을공동소유의 현황도로에서 지난 4월 8일자로 개인 ㅊ○○(마을총무의처)에게 명의이전되어 사유지가 되어 버렸고 이제 민원인을 포함한 주민 4가구는 개인사유지를 지나다니는 신세로 전락했다.

4) 물건의 본질이 마을소유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진행은 마땅히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땅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이 되어야 순리인 것을 마을이장, 마을총무, ○○회 회장 등 관계자 수인이 모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매각행위를 하였던 바 이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공공의 복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5) 또한 ○○○번지에 현황도로가 나 있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들이 당연히 이번 기회에 현황도로를 빼고 토지를 매매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녀야 할 길이 구)노인정에 수십년간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원상복구시켜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번지의 현황 도로까지 포함한 토지 ○○㎡를 전부 매매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6) 이와 같이 ○○○번지와 ○○○번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서 동일한데 그렇다면 금번 ○○○번지의 매각사업에서 이미 구)노인정(○○○번지)이 잠식중인 위 도로(○○○번지)만큼의 지분을 토지분할이나 지분설정 또는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통하여 ○○○번지에 존재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번지 도로를 구현하도록 구정면에 중재를 요청한다.

나. 교통방해 관련

마을○○회 소유 ○○○번지 토지의 매각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판에 마을 총무(ㄱ○○)는 ○○○번지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렴치하게도 기존의 현황도로를 파괴하고 멋대로 차마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020.6.13.~ 6.14.) 교통방해의 죄를 범하고 있다.

다. 집단 따돌림 및 텃세 관련

마을이장 ㅇ○○, 마을총무 ㄱ○○는 담합하여 민원인을 향하여 "그 골목 4가구중 3가구는 가만히 있는데 유독 왜 당신만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느냐?"하면서 서로 갈등을 야기하여 단합을 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집단 따돌림을 서슴지 않고 있어 주민화합을 도모

해야 할 마을이장, 총무가 되려 이를 해하면서까지 이상한 토지매매를 주도하고는 통행로까지 막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마을을 떠나라”, “이 사람은 우리 마을사람 아니니 투명인간 취급을 하여야 한다.”면서 소위 텃세를 단단히 부리고 있다.

라.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관련

이러한 불법행위가 어떤 처분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시행됨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겪을 실질적 부당행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통행금지가처분신청등을 고려하여 주기 바라며 민법 제209조(자력구제)의 행사 가능여부 및 실이익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주택(구정면 OO리 OOO-O번지)진출입로 확보요청 관련

1) 신청인의 민원은 구)노인정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만큼 인근 OOO번지 상에 현황도로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민원 접수 후 4차에 걸쳐 출장하여 민원인을 포함하여 마을이장, 마을총무(현 OOO번지 소유자의 남편), 전마을이장 등과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원만한 중재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OO와 마을회와의 관계 및 OO회의 토지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적단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3) 다만 OOO번지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상 2020년 4월 9일자로 개인친목단체인 OO리 OO회에서 ㅊOO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그 외 마을회소유라고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가 없는 현실여건상 OOO번지 토지는 사유지로 보이므로 OOO번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및 기부 채납은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아 면에서는 여러 차례 이에 대해 설득 및 중재하였으나 소유자는 이에 대해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4) 결국 신청인의 신청 내용은 개인간의 문제로 면에서 중재적인 역할만을 할 뿐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사항이 아니며, 국유지인 OOO번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관련부서(건설과)와 협의해야 사항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

3. 사실관계

- 2020. 05. 28.: 민원 1차접수(2020-4200054-0000560)
  <구)노인정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만큼 인근 토지에 현황도로 확보요청>
- 2020. 06. 01.: 민원 2차접수(2020-4200054-0000568) - 1차민원에 대한 보충
  <구)노인정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만큼 인근 토지에 현황도로 확보요청>
- 2020. 06. 10. : 민원회신
  <민원요구에 따라 중재사항 알림>
- 2020. 06. 15. :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민원접수

4. 판 단

가. 관계법령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5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

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나. 주택(OO리 OOO-O번지)진출입로 확보요청 관련

1) 신청인은 OO리 OOO번지에 대한 진출입로 확보요청과 관련하여 'OO리 마을회'에서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 OOO번지에 'OO리마을회'소유 구)노인정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구)노인정 건물이 점유한 OOO번지 대신 'OO리OO회'소유 OOO번지에 현황도로를 내어주어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는데 현황도로를 확보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OO리OO회'에서 OOO번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신청인의 주택으로의 진출입을 어렵게 한것은 부당하며 매각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 또한 신청인은 비록 구)노인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OO리마을회'이며 이 사건 OO리 OOO번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OO리OO회'이나 'OO리OO회'는 'OO리마을회'에서 조직한 친목단체로서 두 단체는 동일한 단체이므로 OO리 OOO번지의 소유자인 'OO리OO회'는 소유재산인 OO리 OOO번지의 처분과정에서 'OO리OO회'소유 구)노인정 건물의 국유지 점유부분을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3) 이에 대해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첫째, 'OO리마을회'와 'OO리OO회'가 동일단체인지 여부, 둘째, 매각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OO리마을회'및 'OO리OO회'의 동일단체여부, 사적단체인 'OO리마을회' 소유재산 처분절차의 적법성여부 등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고

4)「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7호에서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한편, 국유지 OOO번지상 구)노인정 건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노인정 건물은 1986년도에 건축되었으며 건축 당시 국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이 있었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현재 마을회에서는 새로운 노인정을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구)노인정건물은 개인에게 임대하여 마을회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국유지 OOO번지의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국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여 건축되어 있는 구)노인정 건물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교통방해 관련 및 집단 따돌림 및 텃세 관련

1)「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신청인이 주장하는 교통방해 및 집단 따돌림과 텃세관련부분에 대해서는「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관련

1)「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7호에 따르면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7호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 중 가. 주택(OO리 OOO-O번지)진출입로 확보요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강릉시 건설과에 OO리 OOO번지 국유지(지목:도로)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건축되어 있는 OO리 OO회 소유의 구)노인정 건물에 대하여 관련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릉 OO(OO)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민원

민원 신청내용 요약

강릉 OO(OO)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민원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O호, 강릉 OO(OO)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민원
- 신 청 인 : OO면·OO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OOO, OOO)
- 피신청인 : 강릉시(에너지과)
-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중 절차위법으로 인한 허가취소부분은 ‘각하’한다.
  2.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의 적절성 및 주민의견수렴의 미흡 등 지역수용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결정일자 : 2020. 9. 29.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주민수용성 관련

1)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예정지는 OO면 OOO리 OOO번지, OOO-O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OO동과 OO면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강릉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정도’에 대한 의견제출협조(녹색에너지과-12333, 2018. 8.23.)시행시 OO면 OOO리만 주민의견수용을 하였고 이 문서를 받은 OOO리 이장 OOO은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날인, 이의없음으로 OO면에 보고하고 건축허가가 나는 7개월간 감쪽같이 비밀유지하며 부정한 금품수수 후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되돌려준 내용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2년전 동일장소에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주민수용의견서를 제출지시할때 OO리, OOO리, OOO리, OOO리, 이장에게 지시한 것처럼(사천면-5783, 2015. 5. 7.) 이번에도 4명의 이

장에게 지시하였으면 이 문제가 공개되었을 것이고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 OOO리 OOO번지는 해당마을 끝자락 한쪽 모퉁이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5분의 1면적 밖에 안되는데 해당지역 지번이 OOO리라고 OOO리 이장 한사람의 도장을 받아 마치 이지역 모두가 수용한 것처럼 불법 꼼수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5) 지명은 OO면 OOO리이지만 OO지역이 더 가깝고 더 많은 지형과 주택이 있는데 OO동에 주민수용성의견을 받지 아니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에 주민수용성 규정이 없다면 OO면에 주민수용의견제출지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 안전성 관련

1) 2019. 5. 23.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주변일 대가 초토화되었고 사고수습도 지지부진한데 안전, 환경피해방지대책이 부족한 시점에 국책사업 명목으로 허가가 났으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겠다며 이 지역주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2) 강릉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은 3기 각 40루배 총 120루배이며 화재도 아니고 단순폭발로 사망 2명 상해 6명 재산피해 340억이었습니다. 주변의 공장과 건물의 재산피해액이 541억입니다. 현재 전혀 보상도 못 받고 사고업체가 부실기업이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그날 사고현장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1,000명 정도 있었다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대통령과 산자부장관이 수소는 안전하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3) 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예정부지는 바로 옆에 SK주유소와 LNG가스 충전소가 또한 강릉OO병원과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있는 데 과연 수소발전소가 건립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환경문제 관련

1) 하루에 이산화탄소 245.727kg을 무단배출하고 배출시설과 이산화탄소포집시설이 없습니다. 이는 산타페 디젤 2,199cc차량 17,000,000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일배출량이 245.727kg 발생하면 주변의 산소가 179.380kg 줄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시 산소를 흡수하여 많은 산소량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대기중에 21%인데 17% 이하이면 사망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실내에는 1.000ppm이 넘으면 안됩니다.

2) LNG누출사고로 대구지하철 가스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청량리 가스폭발사고 등이 있었던 바 한 장소에 너무나 많은 LNG유입으로 화재의 위험성, 강릉수소폭발, 광양수소폭발, 노르웨이충전소폭발 등을 보면 수소폭발의 위험성, 이산화탄소의 다량배출로 포집시설이 없어 그대로 배출하여 주변의 환경오염, 대기오염, 생태계파괴, 청정한 공기를 마실 권리도 없어지고 말것입니다. 토지라도 팔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벌써 부동산매매가 안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전결권 관련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은 2,000억 공사인데도 에너지과장전결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주민수용성 관련

1)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1호, 제2호, 제4의2호, 제5호, 「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2항,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8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 의견수렴(반영)’을 전기사업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OO면 OOO리 OOO-O번지 일원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강릉시에 의견 문의 요청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OO면으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하였습니다.

나. 안전성 관련(사업자 제출문서, JSED-75-20-0085, 2020. 6.26.)

1)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정 농도 이상으로 산소와 잘 혼합된 ‘가연성 가스’와 불꽃과 같은 ‘점화원’그리고‘밀폐공간’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밀폐공간(저장탱크와 같은 용기)내(일정농도이상의 산소와 잘 혼합된)가연성가스가 점화원과 만났을 때에만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절대 폭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2) 이를 근거로 강릉과학단지내 수소탱크 폭발사고(’19.05.23.)의 원인을 찾아보면 수소기체(가연성가스)를 저장한 수소탱크(밀폐공간)내에 산소가 일정 농도(6%)이상으로 유입되었고 (제작업체의 과실로 산소제거필터 미부착), 수소탱크 내에서 불꽃(점화원)이발생하면서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3) 강릉 연료전지발전소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와는 다르게 수소기체가 저장 또는 모이게 되는 수소탱크 및 닫힌공간(밀폐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천연가스로부터 개질된 수소가 연료전지 내 인입되면 즉시 이온으로 분리되고 공기 중의 산소이온과 결합하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일단 수소가 이온으로 바뀌면 가연성가스가 더 이상 아니게 되므로 화재 및 폭발과는 무관하게 되고, 만약 개질된 수소가 연료전지에 인입되기 직전에 공기 중에 누출된다 하더라도 수소는 폭발이 아닌 화재만이 발생하게 됩니다.(폭발조건 중 밀폐된 공간이 부존재하며 수소는 공기보다 약 14배가량 가벼워 빠르게 확산 및 공기 중에 쉽

게 희석되어 소염만 발생) 이 역시도 수소가 누출되었을 시에 점화원이 있어야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며, 누출 즉시 연료전지 설비에 설치된 수소 누출감지센서 및 긴급가스차단장치가 작동되어 천연가스 공급 및 수소 공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내 소화설비가 즉시 작동하여 불을 끄게 됩니다.

5) 따라서 강릉연료전지발전소의 폭발위험성은 '0(zero)'입니다.

다. 환경문제 관련(사업자 제출문서, JSED-75-20-0092, 2020. 7.13.)

1) 연료전지발전소는 연소가 아닌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설비로서 가동 중에는 오로지 전기와 수증기만 발생하며 미세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및 일산화탄소(CO) 등의 대기오염 배출규제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일부 발생하나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동일 발전용량 대비 31%, LNG발전소 동일발전용량 대비 56% 수준의 양으로서 실제 강릉안인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소량 2,061ton/h 대비 4/1,000 정도로 적으며 강릉시 내 영동화력, 바이오매스발전까지 포함 시 비율은 더욱 미미합니다.(강릉연료전지의 천연가스 개질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9.3ton/h 수준)

3) 노출된 공간에서의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발전소 대기오염 배출규제물질대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이산화탄소는 탄산음료 및 소화제에 주입하는 물질이며 일상의 맑은 공기 중 상시 0.03% 존재하고 일반 사람의 호흡 중 날숨에도 4%의 이산화탄소가 섞여 배출되는 친숙한 물질임).

라. 전결권 관련

「강릉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제5조(전결사항)에 따라 전기(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협의(1,000kW 초과) 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3. 사실관계

- 2018. 08. 20.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문의(산업부→강릉시)
- 2018. 08. 23. 전기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제출 협조(에너지과→실과, 사천면)
- 2018. 09. 03. 사천면 "의견없음"회신
- 2018. 09. 04. 전기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 회신(강릉시→산업부)
- 2018. 09. 27.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함
- 2019. 01. 28. 개발행위관련 도시계획심의(도시과)
- 2019. 03. 13. 건축허가(강릉시 건축과)

- 사업시행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6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선진지 견학을 2회 추진
  - 주민설명회1차 2019. 04. 11. OOO리 마을회관
  - 주민설명회2차 2019. 05. 16. OOO리 마을회관
  - 주민설명회3차 2019. 07. 11. OO면사무소
  - 주민설명회4차 2019. 11. 22. OO동
  - 주민설명회5차 2020. 04. 21. OO면사무소
  - 주민설명회6차 2020. 06. 22. OO동
  - 선진지견학1차 2019. 10. 24. 잠실롯데타워, 노을그린에너지
  - 선진지견학2차 2019. 12. 12. 잠실롯데타워, 노을그린에너지
- 2020. 06. 09.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사항을 담은 민원합의서 체결
  - 주요내용 : ①안전·환경위원회 구성하여 소음, 분진 등 피해 최소화 ②방음벽설치 ③발전용량 미증설, 저장탱크 미설치 ④직원주민채용 ⑤인허가 시 적극협조
  - 협의구성원 : OOO리주민, OO면주민, OO동주민, 제이OO(주)
- 2020. 07. 16.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민원접수
- 2020. 08. 27. 검찰에 고발장 접수(제2020-1265호, 2020. 8. 27.)
- 2020. 09. 17.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주최로 열린토론회 개최

4.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 · 시 · 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배분) ① 지원금의 배분은 법 제2조에 따라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8.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5. 이 사건 신청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8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5조제1항제3호는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은 각하한다고 되어있다.

2) 한편, 신청인의 대표자인 ○○면·○○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은 2020년 8월27일 강릉시장과 ○○면 ○○○리 전 이장 ○○○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며(제 2020-1265호, 2020. 8. 27.) 현재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이 다투고 있는 허가절차의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다투고 있는 바 이는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8호 및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6. 의견표명

가. 입지선정 관련

1)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한 입지선정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가 안전성이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관광도시를 대표적 도시브랜드로 추구하는 강릉시의 미래발전전략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지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이다.

2) 한편 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 진행초기단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은 강릉시에 의견문의를 하면서 발전소 건설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개발행위 허가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외 요망)두가지 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강릉○○○연료전지, 강릉○○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문의, 전기위원회사무국-10938, 2018.8.20.)

3)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적이고 명확한 기준 및 판단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전문가마다 주장이 다르고 결국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건립되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 국가적 사업이라 하여 양적증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이나 환경문제 등 예측가능한 갈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및 판단자료를 제시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정책실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이러한 기준 및 판단자료 정립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전문성, 종합성에 비추어 볼 때 관할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 할 것이며 또한 관할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라는 국가정책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사업허가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는 전기위원회는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수반하는 이상의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기준 및 판단자료를 명확히 마련하여 발전사업허가심의를 위한 의견문의시에 관할지 자체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주민의견수렴 관련

1) 지역의 수용성 정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주민의견수렴으로 보고 그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발전사업허가요건으로 지역주민의견수렴(동의)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2) 그렇다면 발전사업허가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관할지자체에 의견 문의를 하는 전기위원회는 지역의 수용성 정도가 의미하는 실질적 의의와 세부적인 절차 및 이러한 요건이 흠결되었을 경우 발전사업허가의 효과가 어찌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지자체가 발전 사업허가심의를 위한 의견문의의 취지에 적합하게 검토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관할지자체인 강릉시는 주민의견수렴을 하여 회신였는바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허가취소를 관할지자체인 강릉시에 요청한다면 강릉시는 무슨 기준으로 이를 판단 할 수 있겠으며 허가취소에 따른 또다른 민원을 초래하며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4)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종국적인 방법은 전기위원회가 지역의 수용성 정도라는 검토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하고 강릉시는 전기위원회에 이러한 기준의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판단

따라서 피신청인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과 관련한 갈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발전소건설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및 지역의 수용성 정도를 관할지자체에 의견문의할 때에 관할지자체가 실질적이고 적절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줄 것과 명확한 기준을 제정해주도록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절차위법으로 인한 허가취소부분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의 적절성 및 주민의견수렴의 미흡 등 지역수용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판단자료제공 및 명확한 기준제정을 전기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면 ○○리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허가 취소신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면 ○○리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허가 취소신청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10호
- 신 청 인 : 이○○(○○군 ○○면 ○○대로 ○○○○)
- 피신청인 : 강릉시(건설과)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 결정일자 : 2020. 11. 20.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신청인과 통화하여 인접 토지의 존재, 건축계획 및 신청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도 협의가 된 것처럼 속여 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리 이장의 기망행위이자 직권남용이며 준공무원으로서 부조리한 행동입니다.

나. 도로점용 담당자가 토지로의 진입로를 자의적으로 일부에 그리고 협소하게 책정하여 주택건축에 제약이 따르는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 도로점용 담당자가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인지(신청인 토지로의 진입로를 남겨두고 그 외의 면적을 점용허가 함)하고도 탁상행정으로 신청인 및 점용신청인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는 소극행정입니다.

라. 소유토지와 거리상 매우 인접한 정자 및 공판장, 운동시설로 소음, 쓰레기투기, 교통방해 등으로 피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하고, 주택 정면에 위치하므로 거실 창을 통해 사생활이 노출되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 자유 불가침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마. 마을에서 사용하는 대형창고 건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 또 마을을 위한 시설설치로 주택을 건축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라지만 신청인에게 이중

으로 과도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허가과정의 부당성 관련

1)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마을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국유재산법」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이며

2) 하천점용에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마을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허가대상은 마을회수익사업을 위한 공판장으로 영구구조물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가설건축물(콘테이너)로 설치되어 있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위치합니다.

나. 도로점용담당자의 자의적인 진입로 설정 관련

도로점용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진입로를 설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OO리 OOO-O의 통행을 위해 일부 점용구간을 제외하고 허가신청 요청하였으며 또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변경, 철회 등의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다. 소음, 쓰레기, 교통방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1) 도로점용과 관련한 환경 및 교통방해, 사생활침해 등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피허가자(OO면장)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2) 하천점용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환경 및 교통방해,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없으며, 허가 시점에서는 빈 공터인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사실관계

- 2020. 9. 1.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목적: 정자설치)
- 2020. 9. 2.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알림 ※건설과 → OO면
- 2020. 9. 9. :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목적: 가설건축물 및 골재포설)
- 2020. 9. 16. : 공유수면 점용허가 알림 ※건설과 → OOO리 마을위원회
- 2020. 10. 15.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변경)(목적: 정자 및 체육시설 설치)
- 2020. 10. 20.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알림(변경) ※건설과 → OO면
- 2020. 10. 20. : 가설건축물(농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축조신고수리 통보
  ※ OO면 → OOO리 마을위원회
- 2020. 11. 4. : 가설건축물(정자) 축조 신고 신청
- 2020. 11. 5.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민원접수
- 2020. 11. 9. : 가설건축물(정자)협의 통보 ※건축과 → OO면
- 2020. 11. 9. : 건설과 면담, OO면 면담, 현장조사(1차)
- 2020. 11. 13. : 건설과 면담
- 2020. 11. 17. : 현장조사(2차)

4.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유재산 관리 · 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 · 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조건부 사용허가) 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변경, 철회 등의 허가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에 따른 관계인·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5. 이 사건 신청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은 제1조에서 국유재산법의 목적으로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공유수면(公有水面)을 보전·관리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에 대하여, 제19조에서는 점용·사용의 허가 등의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나.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허가과정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1)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2) 국유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여부는 관리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관리청의 허가결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 관리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주민편의 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기구 및 정자설치를

마을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피신청인이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관리규정」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기간을 제한하여 허가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신청 또한 마을회 수익사업을 위한 공판장용도로 영구구조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콘테이너)로 허가기간을 제한하여 「공유수면 관리 ·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하였기에 이러한 피신청인의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허가처분과정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여 위법 ·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도로점용담당자의 자의적인 진입로 설정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도로점용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진입로를 설정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므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 우리 헌법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헌법규정은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을 무제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리와의 조화나 공공복리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제약도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피신청인은 지목이 도로인 OOOO번지에 대한 운동기구 및 정자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면서 인접지인 신청인 소유토지인 OOO-O번지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폭 3미터를 남겨두고 허가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구정면 또한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는 등 신청인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였다고 생각된다.

5)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본 사건의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권 보존 및 행사에 하등의 제한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재량권행사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음, 쓰레기, 교통방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도로점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운동기구와 정자, 공판장이 축조되면 소음, 쓰레기, 교통방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향후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난 후에 예상되는 피해나 불편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기본권적인 가치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법익, 기본원칙, 제도 등의 헌법적 가치를 상호 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헌법정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 ·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은 일체의 소음이나 생활방해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리와 규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등 상충하는 권리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교통방해관련규정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이 소음, 쓰레기,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려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준의 피해가 발생함이 우선이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현재 구체적인 피해발생여부 및 피해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장래의 피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침해발생의 상당한 가능성, 침해발생시점의 급박성, 침해가 발생하고 난 후의 피해구제가 무의미하다는 최후 수단성 등의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신청인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주장하나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피신청인의 허가행위와 이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재산권의 과도한 이중피해여부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지난 10년간 마을회운영의 창고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못하였는데 새로이 마을을 위한 시설을 다시 설치하여 신청인의 주택건축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도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토지대장에 따르면 OOO-O번지는 2017년 5월31일에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10년간 토지 재산권행사를 못하였다는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중으로 과도한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

결국 도로점용허가처분, 하천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법 · 부당한 도로점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재산권 및 소음, 쓰레기, 교통방해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민원상담 및 법률상담

민원상담〔민원인〕

일련번호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내용
2020-1	○○○협회	강릉항 마리나 불법 및 운영방치 개선과 계류비책정 료율건	○민원사항 면담 ○향후 진행사항 및 절차 안내
2	ㄱ○○	귀농자대상 농업창업자금 환수조치에 대한 민원(농정과)	○창업자금연장대상자 누락 ○창업자금사용처에 대한 규정위반에 대한 환수조치 ○소송결정까지 환수조치 보류요청 ⇒ 담당자와 협의하여 환수보류조치하고 소송후 조치계획 통지 / 소송관련 상담
3	ㄱ○○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절차 등	○향후 진행절차 안내 등
4	ㄹ○○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신청	○민원사항 면담 ○향후 진행사항 및 절차 안내
5	ㅇ○○	에코파워의 건물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에너지과)	○횟집에 대한 보상이 건물보상에 포함되었는지 문의 ○영업손실보상대상인지 문의 ⇒ 누락되었으면 에코에 추가청구 포함되었으면 건물주에 청구할 것을 안내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요건미비로 대상 아님
6	ㄱ○○	보훈처 처분에 대한 법률상담	○보훈처 처분관련 구제절차 문의 ⇒ 행정소송후 제소기간 도과 안내
7	ㄱ○○	불법용도변경 관련 (건축과)	○불법용도변경(주차장 미확보)관련 문의 ⇒ 향후 절차 상담 및 안내
8	ㅎ○○	긴급지원금관련 (생활보장과)	○긴급지원금 관련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 ⇒ 민원사항을 담당자에게 전달 및 시정조치

일련번호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내용
9	ㅊOO	불법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권 행사(초당동)	ㅇ초당동 221-1(전, 1367㎡) ㅇ불법건축물관련 소유권행사 위한 공유자 확인 ⇒ 민원사항관련하여 초당동 문의 안내
10	ㅊOO	무허가건물매도 관련	ㅇ무허가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
11	OO센터	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관련(아동보육과)	ㅇ지원사업 관련 담당자와 소통방법 불편 호소 ㅇ지원사업 관련 신청서류 보정가능 여부 상담 ⇒ 담당자 협의후 신청서류 보정가능하도록 처리 ⇒ 담당자와 면담하여 불편사항전달 및 업무관련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안내
12	ㅎOO	강릉OO센터 OO사업단(생활보장과)	ㅇCCTV 열람 ㅇ초과근무 정산 ㅇ근무배정에 대한 형평성 ㅇ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미흡 ⇒ 담당자 협의로 민원사항 전달 ⇒ 민원인에게 현재상황 안내
13	ㄱOO	코로나 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관련(복지정책과)	ㅇ5인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지급불가통보후 이의 신청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으나 잘못된 부서로 3회 연결되는 등 처리 불만 ⇒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결, 처리통보 받았음
14	ㅂOO외	성산면 관음1리 마을회관 앞 도로선형 확장공사 반대 (건설과)	ㅇ건설과 담당자 연결 ⇒ 원만한 합의하였다고 통보받음
15	ㄱOO	주문진문화교육센터 2019년 하반기 개강관련 및 2020년도 교육강사선정 과정에 대한민원	ㅇ민원사항 면담 ㅇ향후 진행사항 및 절차 안내
16	ㅈOO	선거관리위원 선임무효 및 대표자 선거불법에 따른 재선거	ㅇ민원사항 면담 ㅇ법률상담 ㅇ향후 진행사항 및 절차 안내
17	ㅂOO	현황도로폐쇄에 따른 갈등해소	ㅇ민원사항 면담 ㅇ향후 진행사항 및 절차 안내

일련번호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내용
18	ㄱOO 외 1명	영농법인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한 토지소유주 확인	ㅇ개인정보관계로 부서에서 고지하기 어려움 ⇒ 전소유자를 통한 방법 또는 인근 소유자를 통한 확인방법을 안내해 드림
19	ㅎOO	노인일자리 사업 - 동료들과의 불화(사천면)	ㅇ현장방문 후 화해 및 해결위한 노력 약속
20	ㅎOO	옥천동(구)여성회관 철거(균형개발과)	ㅇ분진, 소음 피해관련 ⇒ 관련부서에 대한 법적책임등과 관련문제 문의
21	OO 단체	사천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관련(에너지과)	ㅇ허가과정에 대한 법적 문제 상담 ㅇ요구사항 청취 ⇒ 사업자 및 관련부서에 전달
22	ㅎOO	주택진입로 폐쇄에 따른 불편 (회계과)	ㅇ현장방문 약속 ㅇ관련부서(회계과)와 협의후 해결 위한 노력 약속
23	ㅇOO	도로점용허가 및하천점용허가취소신청 (주택과)	ㅇ부서에 민원전달 안내 및 이후 절차 상담 ㅇ현장방문
24	OO아파트	분양전환과정 분쟁	ㅇ관리부서인 주택과와 공동으로 면담 ㅇ이후 법률검토 및 진행절차에 대해 협의
25	ㅂOO	혼합플라스틱 매각 수의계약과정에대한 정보공개청구	ㅇ서류검토후 연락 약속 ㅇ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절차 안내 및 민원상담
26	ㄱOO	채무독촉 및 실종신고 관련	ㅇ자녀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행최고 및 자녀에 대한 실종신고 관련 ㅇ예상되는 채권실현절차와 실종신고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7	ㅊOO	민형사상책임과 손해배상	ㅇ농동단지 조성으로 인한 토사매립으로 소나무고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ㅇ향후진행절차에 대한 안내 ㅇ현장조사

법률상담〔공무원〕

일련번호	부서	상담일시	조치내용
1	체육과	2020.1.13.(월)	○무도장 민원관련 ○시설기준해석
2	환경과	2020.3.5.(목)	○환경과 습지보전 ○2019.10. 태풍미탁피해관련 민원상담
3	산림과	2020.4.16.(목)	○인허가관련 반복민원 상담
4	감사관	2020.5.25.(월)	○환매결정
5	복지정책과	2020.6.15.(월)	○장애인 복지
6	녹지과	2020.6.15.(월)	○영조물 배상책임
7	감사관	2020.6.29.(월)	○관련업무(보안)
8	에너지과	2020.7.14.(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9	농정과	2020.8.12.(수)	○영업정지처분취소 및 집행정지신청
10	기업지원과	2020.8.27.(목)	○상표권 관련
11	예산정책과	2020.9.21.(월)	○선거법 관련

3 위원회 주요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제도 컨설팅 (2020.1.10.)

위원 위촉식

- 김진 위원 위촉기간
  2020.4.7.~2022.4.6.

노을그린에너지 방문 (2020.8.20.)

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 관련 열린토론회 (2020.9.17.)

국민권익위원회 주문진읍 이동신문고 (2020.10.14.)

대전 대덕구 감사평가실 우리시 방문 (2020.11.10.)

민원법률 상담실 운영 ('19. 6월 ~ 매주 월요일)

- 시　민 ⇒ 민원처리 관련 법률상담
- 공무원 ⇒ 민원처리 과정상 법률해석 지원

위원회 회의 모음

3 부록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11.14 조례 제12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사회갈등”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 제 ·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 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처리
3.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 · 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권익구제 기관 ·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⑥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이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6.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16조(사무국)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직원을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시장은 사무직원 중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우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12.27 규칙 제6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회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써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2장 민원의 접수·조사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신청한 민원과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뢰받은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관련기관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세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민원 접수일로 본다.

③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와 강원도 갈등조정위원회 등에 중복 신청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

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 등은 피조사자가 여성,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 또는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중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4.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반복 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이미 처리한 내용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합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③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 관련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 등이 민원의 조사를 종료한 때(제11조의 중지 등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부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6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정사항
2. 제26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해촉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민원 접수·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9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서의 경정)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5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인과 관련기

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통지 전에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의)

①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7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8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운영

제29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기관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과 여비)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신분증명서)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별표〕와 같다.

제34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5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 ·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 · 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 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 · 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 ·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 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 · 예규 · 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 ·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 자료의 제출, 사실 · 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 · 단체 · 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 · 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 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 · 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 · 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 · 회계 · 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 · 보상금 ·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 ·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 보안관찰처분 · 보호처분 · 보호관찰처분 · 보호감호처분 · 치료감호처분 ·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

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 ·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 · 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 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 ·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 · 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 · 자료의 제출, 사실 · 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 ·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7806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도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보고서

발 행 일 | 2021년도 5월
발 행 처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
편 집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
주 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전 화 | 033-640-5793~5794
팩 스 | 033-640-4453
홈페이지 | 강릉시청 홈페이지 www.gn.go.kr
시민참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